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2. 16(금) 10:00

## 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  
(푸른미래도시국 공원녹지과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91호
- 나. 제 출 자 : 고영찬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2. 2.
- 라. 회부일자 : 2024. 2. 2.

## 2.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의하여 유해조류 먹이 주기 행위 금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법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건물 부식 및 악취를 비롯하여 구민 생활에 유해조류가 끼치는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안 제4조)
- 라. 유해조류 먹이 주기 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규정(안 제5조 및 안 제6조)
- 마. 유해조류 퇴치 기동반 운영(안 제7조)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73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24. 2. 5. ~ 2024. 2. 13.

## 5. 검토의견

### 가.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임 사항에 따라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는 유해 조류의 피해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나. 주요 내용

- 1)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정의 :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구체적 유해조류를 규정함
- 2)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3)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안 제4조)
  - 유해조류 퇴치에 관한 사항
  - 유해조류 먹이 주기 행위 점검·단속에 관한 사항
  - 거리 등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가지 가로청소 등
- 4) 유해조류 먹이 주기 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규정(안 제5조 및 안 제6조)
  -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조류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
- 5) 유해조류 퇴치 기동반 운영(안 제7조)
  - 유해조류 퇴치를 위한 기동반 운영 및 사업 위탁의 근거를 규정함

### 다. 검토의견

- 최근 집비둘기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는 등 유해조류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유해야생동물의 피해 관리를 위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피해예방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 비둘기 먹이주기 관련 언론보도('22.7월, MBC 실화탐사대)



○ 전국 집비둘기 개체수 및 민원 발생 건수

구 분	개체수*	민원발생 건수
서울	8,073	1,177
부산	4,778	301
경기	2,779	295
충북	4,780	23
경남	2,298	29
기타	4,993	483
계	27,701	2,308

\* 지자체에서 집비둘기 피해지역 대상으로 취합한 개체수임(2021년 기준)

※ 출처 : 환경부

○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유해조류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점검·단속 등의 근거 마련으로 유해조류 배설물로 인해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됨.

## 관계법령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3.] [법률 제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군·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략)

9의2.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한 자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4.] [환경부령 제1067호, 2023. 12. 14., 일부개정]

제4조(유해야생동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은 별표3과 같다.

[전문개정 2012. 7. 27.]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5.8.4.>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